

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자료

2026

주식회사 베스트인 광주지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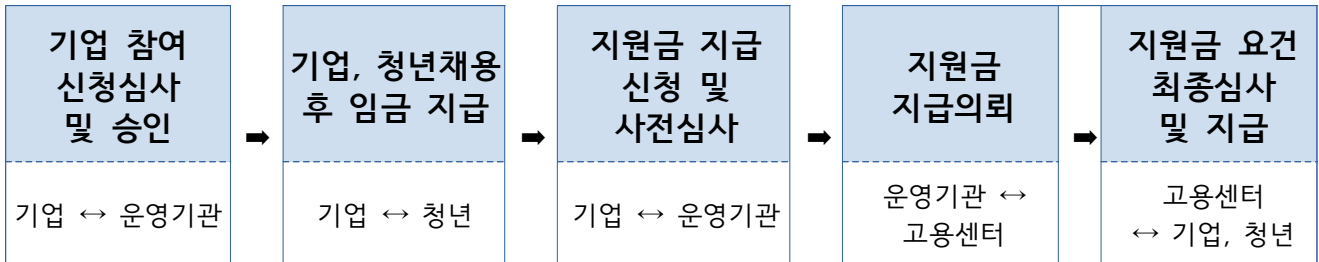
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

I 사업 개요

□ 추진 배경

- 『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』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.
- (수도권)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,
- (비수도권)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

□ 지원 절차



II 지원 금액

구분	수도권	비수도권
지원기업	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지역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	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지역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지원청년	만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(실업기간 4개월, 고졸자 등)	위 해당 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(청년 참여조건 없음)
지원금액	(기업)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지원	(기업)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 1년간 총 720만원 지원 (청년) 6, 12, 18, 24개월차 지급 각 120만원(최대 720만원) *지원금은 지역별 상이

Ⅲ

수도권 유형

- 해당사항 없음

Ⅳ

비수도권 유형

□ 지원 대상(기업)

-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(이하 “기준 피보험자 수”) 5인*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우선지원 대상기업

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

- √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, 소수점 이하는 올림(예시: 평균 8.02명 → 9명으로 인정)
- √ 청년을 먼저 채용하고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,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

- 비수도권 지역 내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
- 단, 「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단지 내 입주한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에 상 중견기업은 참여 가능함.

□ 5인 미만 기업 중 예외 지원 대상기업

-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
-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
- 신·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
- 청년 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
- 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

□ 지원 제외(기업)

- 소비·향락업 등 업종, 국가 및 공공기관 등
- 「근로기준법」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
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6조제2항(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)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(최대 12개월)에 있는 사업주
- 고용보험료 체납기업
-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(이직은 “최종 이직”을 의미함.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
-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(이직은 “최종 이직”을 의미함. 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)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여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협약이 해지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
-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(2020년, 2021년 운영) 또는 청년일경험지원 사업(2020년 운영)에 참여하여 부정수급(부정청구)으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
-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걱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

■ 지원대상(청년)

- 비수도권 소재의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

*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기업 신청 필수(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청년 지원 불가)

■ 지원 제외 청년

- 채용일 기준 사업주(법인의 경우 대표이사)의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
-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(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 외국인 제외)
-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
-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(휴학포함) 중인 자(졸업예정자는 가능)
-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*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
- 인력 공급업(7512), 경비 경호업(75310),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(74100)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활용하는 경우

□ 채용 요건

- '26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
 - * '26.1.1.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의 수습(시용)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정규직으로 채용한 날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
- '26.1.1. 이후 지원대상 청년을 인턴 등의 기간제근로자로 먼저 채용한 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*한 경우(3개월 종료 즉시 전환한 경우 포함)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
 - * 기업에서 기간제로 채용한 청년을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환 전에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을 하여야 함 →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의 기산점 및 지원금 시작 시점은 정규직 전환일
 - 단, 고용노동부 「국민취업지원제도」 또는 「청년일경험지원」·「일학습병행」 사업에 참여중인 청년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간제(학습) 근로계약을 맺더라도 일경험 또는 직무능력 학습과정에 대한 참여이므로 일반적 의미의 '취업'으로 보지 않음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, 연내('26.12.31.까지)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

V

지원 내용

-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% 까지 지원 가능
- 기업지원금(공통)
 - 지원대상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1년 연 최대 720만원(월 60만원×12개월)
- 청년지원금(비수도권 유형)
 -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최대 2년간 지원
 - (일반 비수도권) 6·12·18·24개월 각 120만원씩 최대 480만원 지원 **광주, 나주, 제주**
 - (우대지원 지역) 6·12·18·24개월 각 150만원씩 최대 600만원 지원 **담양, 영광, 화순**
 - (특별지원 지역) 6·12·18·24개월 각 180만원씩 최대 720만원 지원 **곡성, 구례, 장성, 함평**
- **참여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 전에 퇴사한 경우(고용조정 이직 또는 자발적 퇴사 등)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**
- **참여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(6개월)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,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하고**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하되,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
- **참여기업이 채용 후 최초 1년 이내의 지원대상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고용유지지원**

금을 수급하는 경우, 해당 청년의 고용유지조치일수 동안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

VI 지원금 신청 및 지급요건

-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(6개월)이 종료된 후, 익월부터 산정하여 반드시 “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을 신청”하여야 함
 - 2, 3회차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,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,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. ※ 미신청시 지원금 지급 불가
 - * 1~3회차 지원금은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도과하여 신청시 지원 제외

신청 기한 예시						
채용	6개월 고용유지	1회차 신청마감	채용 후 9개월	2회차 신청마감	채용 후 12개월	3회차 신청마감
'26.2.23	'26.8.22	'26.10.31.	'26.11.22	'26.1.31.	'26.2.22	'26.4.30

-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*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
 - * 기간제 근로자(계약직)로 채용된 경우,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
- 고용조정 제한 대상 :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
 - * 채용일에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
- 고용조정 제한기간 :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*
 - * 기간제 근로자(계약직)로 채용된 경우,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1년의 기간
 - 청년 채용 후 1년 이내 청년이 자진퇴사 하는 등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 지원종료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함
 - 동일 사업장에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명인 경우, 각 청년별로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·전환 후 1년의 기간까지 고용조정 이직이 없어야 함
- 위반 시 지원금 지급제한
 -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 고용유지기간(6개월)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음
 -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 고용유지기간(6개월)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(정규직)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의 지원금만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,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

예시

- ① A참여기업에서 甲을 '26.2.10. 채용, 乙을 '26.6.4. 채용하였고, '26.10.1. A기업에서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경우 → 甲의 경우 '26.2.10 ~'26.9.30.까지의 지원금은 지급 인정(총 7개월 20일이므로 7개월분 지원금 지급), 乙은 지원금 전액 부지급

- 신규채용 청년에 대한 지원제한 : 위반 시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,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
- 기타 인원 변경 등 기타 특이사항 발생 시 반드시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및 문의바랍니다.

○ 사업 참여 문의

(주)베스트인 광주지사 기업지원팀 /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
T. 062-714-3658 / 062-716-3240

E. bestin3766@naver.com

F. 062-714-3959

A.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길 31-15, 광주아트센터 6층